

문서번호	교육지원과-100899
결재일자	2015. 10. 2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100호

주무관	교육기획팀장	교육지원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박영주	이재현	代이재현	정찬모	김경호	10/27 김기동
협 조					

2015.광진구서울형혁신교육지구
방과후연계 마을학교 공모계획



행 정 관 리 국
 (교 육 지 원 과)

▶ 2015.광진구서울형혁신교육지구 ◀

방과후연계 마을학교 공모계획

학교와 마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광진구 전역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방과후 연계 마을학교¹⁾를 공모하여 ‘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광진’을 실현코자 함

1 관련근거

- 2015.광진구혁신교육지구준비계획(구청장방침 제966호-2015. 9. 9)

2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1월 ~ 2016. 2월 (4월간)
- 사업규모 : 마을학교 ○○개
- 지원금액 : 1개소당 2,000천원 이내(강사비, 재료비)
- 사업방식 : 공모
- 신청자격 : 개인, 기관, 단체 등 광진구주민 누구나
 - 5명 이상 광진구민인 청소년이 참여한 마을학교
- 사업분야 : 예·체능, 전통놀이, 직업체험, 자기개발, 동아리활동 등

3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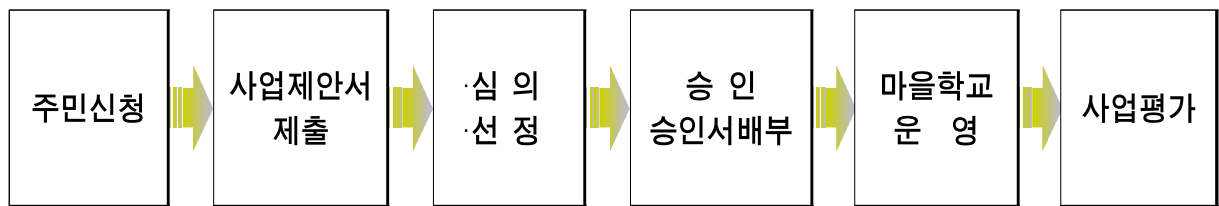
- 학교-마을 간 협력적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 지원
-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과 돌봄의 교육생태계 조성
- 지역사회의 교육역량 강화

1) 문화, 예술, 체육,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단체, 기관 등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

가. 설립기준

- 1) 신청자격 : 개인, 단체, 기관 등 주민 누구나
- 2) 지원조건 : 5명 이상 광진구민인 청소년이 참여한 마을학교
 - 가)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
- 3) 지원범위 : 강사료, 재료비(총 지원금액의 20% 이내)

나. 지원절차



다. 공모일정

연번	구분	일정	내용
1	공 고	2015. 10. 27.(화) ~ 11. 2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▫ 광진구 공고 게시판
2	접 수	상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담당자이메일(원칙) (ju0021@gwangjin.go.kr) ▫ 방문접수(필요시) ▫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(붙임)
3	심의및선정	2015. 11. 4.(수) ~ 11. 5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광진구혁신교육지구실무분과위원회 (마을공동체)
4	선정발표	2015. 11. 6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▫ 광진구 공고 게시판

라. 심사계획

1) 심의위원회 : 광진구혁신교육지구실무분과위원회(마을공동체)

2) 위원구성 : 7명(분과위원 4명, 공무원 3명)

가) 실무분과위원회 위원

- 마을학교생태계조성사업팀장(김승호)
-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활동가(최미정)
- 담쟁이북카페마을모임운영위원(최미옥)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(이채희)

나) 공무원

- 교육지원과장(홍선옥), 교육기획팀장(이재헌), 마을공동체팀장(신봉수)

3) 심의회의 개최

가) 일시 : 2015. 11. 4. ~ 11. 5.(예정)

나) 장소 : 기획상황실 예정

다) 방법 : 심사기준(안)에 의거 심의위원별로 사업계획안 개별심사후
점수 합산, 고득점순으로 선정

마. 심의기준(안) : 붙임

1) 주체의지 및 역량 : 사업역량, 주체참여도

2) 사업의 적정성 등 : 공익성, 적합성, 구체성, 네트워크 형성 등

3) 운영 및 예산 : 사업의 지속성, 사업비의 적정성

4) 기타사항 : 자부담 비율

바. 지원제외

1)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

2) 마을학교를 영리목적을 운영할 경우

3) 마을학교를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 등으로 운영할 경우

4) 교육내용이 입시 위주의 교육인 경우

사. 사업승인

- 광진구혁신교육지구분과위원회심의(마을공동체)

5

소요예산

- 예산액 : 10,000천원
- 예산과목 : 글로벌인재육성, 교육지원, 일반운영비, 행사운영비
- 예산집행기준

강 사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주 강 사 : 30천원, 초과 : 20천원· 보조강사 : 20천원, 초과 : 10천원□ 강사료의 경우 초과시간 1시간만 인정□ 보조강사의 구성이 1인 이상의 경우 사유 작성
재 료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□ 자산취득의 성격은 자부담으로 구입□ 재료비는 전체 지원예산의 20%까지 편성 가능□ 재료비 책정시 1인당 기준으로 작성

6

향후계획

- 사업비 교부
- 운영결과 월별 수합, 평가
 - 제출기한 : 매월초 10일 이내
 - 제출서류 : 학습자출석부, 보조금 집행내역, 수업내용 등
 - 제출방법 : 이메일, 방문 제출
- 프로그램 중간점검 및 평가

- 붙임 1. 마을학교선정심사기준(안) 1부
2. 공고문 1부. 끝.